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A2BL)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2차 정정 안내

■ 기타품목 바닥마감 옵션 정정내역 - 37P.

기준									
구분	내용		제조사	106A	106B	106C-1 · 106C-2	106D	106E-1 · 106E-2	106T
전실	광폭 강마루	전실(딥브라운/켄차그레이 무상선택제)	동화마루	23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60,000
	포세린타일 + 강마루	포세린타일(복도 + 거실 + 주방) + 강마루(침실)	대동타일, 원앤원우드	620,000	580,000	580,000	610,000	610,000	910,000
	포세린타일 + 광폭 강마루	포세린타일(복도 + 거실 + 주방) + 광폭 강마루(침실) (딥브라운/켄차그레이 무상선택제)	대동타일, 동화마루	750,000	700,000	700,000	730,000	730,000	1,020,000
정정									
구분	내용		제조사	106A	106B	106C-1 · 106C-2	106D	106E-1 · 106E-2	106T
전실	광폭 강마루	전실(딥브라운/켄차그레이 무상선택제)	동화마루	23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60,000
	타일마루+ 강마루	타일마루(복도 + 거실 + 주방) + 강마루(침실)	구정마루, 마블러스 젠	1,540,000	1,460,000	1,460,000	1,520,000	1,520,000	2,280,000
	타일마루+ 강마루	타일마루(복도 + 거실 + 주방) + 강마루(침실) - 평면옵션 선택 시	구정마루, 마블러스 젠	1,690,000					2,430,000
	타일마루+ 광폭 강마루	타일마루(복도 + 거실 + 주방) + 광폭 강마루(침실) (딥브라운/켄차그레이 무상선택제)	구정마루, 마블러스 젠	1,670,000	1,580,000	1,580,000	1,640,000	1,640,000	2,390,000
	타일마루+ 광폭 강마루	타일마루(복도 + 거실 + 주방) + 광폭 강마루(침실) (딥브라운/켄차그레이 무상선택제) -평면옵션 선택 시	구정마루, 마블러스 젠	1,870,000					2,590,000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여주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3.10.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여주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또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택지유형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적용	10년		1년	없음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4.12.(금)	2024.04.22.(월)	2024.04.23.(화)	2024.04.24.(수)	2024.05.07.(화)	2024.05.09.(목)~ 2024.05.12.(일)	2024.05.19.(일)~ 2024.05.21.(화)

1

공통 유의사항

2023.03.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사항 관련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민영주택) 적용 사항

특별공급 중복청약 관련(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타 사항
종전		개정	종전		개정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세대원 내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	부부에 한해 중복청약 가능 (선신청 인정, 후신청 무효)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등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주요사항

1순위 요건	재당첨제한	제한사항	분양가 상한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주시 또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내 거주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 입주자저축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의 경우 재당첨제한에 무관하게 청약 가능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 적용주택 등	- 거주의무기간 無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1년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재당첨제한 10년	「주택법」 제57조 등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지로서 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②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민간참여형 분양주택입니다.
 - 청약 신청 시 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②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의한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조건이 상이하오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분양유형별 청약 가능 주택형

공공분양주택	민영주택 (본 입주자모집공고 적용)
전용면적 74㎡A~B, 84㎡A~T	전용면적 106㎡A~T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

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등)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본 주택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jukri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위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2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청약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2.(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여수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2023.10.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라남도 여수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년 04월 22일(월)	2024년 04월 23일(화)	2024년 04월 24일(수)	2024년 05월 07일(화)	2024년 05월 09일(목) ~ 2024년 05월 12일(일)	2024년 05월 19일(일) ~ 2024년 05월 21일(화)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10:00~17:00)	건본주택 방문 (10:00~17:00)
장 소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건본주택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02-3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간

중복청약 관련 유의사항				
동일단지에 중복청약한 경우				
청약 유형		본인 중복 청약(1인)		세대원 중복 청약(2인)
(특공) 공공분양주택 or 민영주택(비규제지역)	+	(특공) 공공분양주택 or 민영주택(비규제지역)	청약 불가	모두 부적격(부부의 경우 예외)
(특공) 공공분양주택	+	(일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무효	모두 부적격(부부의 경우 예외)
(특공) 민영주택(비규제지역)	+	(일반) 민영주택(비규제지역)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무효	모두 당첨 인정
(일반) 민영주택(비규제지역)	+	(일반) 민영주택(비규제지역)	청약 불가	모두 당첨 인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				
청약 유형		본인 중복 청약(1인) (동일청약통장 사용시)	세대원 중복 청약(2인)	
선당첨	후당첨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선당첨 인정(후당첨 무효)	선당첨 인정(후당첨 부적격)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	(일반) 민영주택(비규제지역)	선당첨 인정(후당첨 무효)	모두 당첨 인정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	(특별) 민영주택(비규제지역)	선당첨 인정(후당첨 무효)	선당첨 인정(후당첨 부적격)
※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해 부부에 한해 중복청약 인정됩니다. [중복당첨 시 선신청 인정, 후신청 무효(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사항

-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등 부부에 한하여 중복신청 가능하며,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신청 접수일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으로 인정]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무기간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거주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인 여수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 을 참고하시어 계약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4.03.2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죽림1지구 내 A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3층 15개동 총 931세대 중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 129세대
[특별공급 17세대(다자녀가구 13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계		
민영 주택	2024000146	01	106.1326A	106A	106.1326	30.1972	136.3298	77.0320	209.0397	77.9990	20	2	1	3	17	1
		02	106.1708B	106B	106.1708	30.4475	136.6183	77.0596	209.3543	78.0271	73	9	2	11	62	4
		03	106.1512C	106C-1	106.1512	30.3772	136.5284	77.0455	209.2510	78.0127	11	-	-	-	11	-
				106C-2	106.1512	30.3772	136.5284	77.0455	209.2510	78.0127						
		04	106.1708D	106D	106.1708	30.4475	136.6183	77.0596	209.3543	78.0271	19	2	1	3	16	1
		05	106.1512E	106E-1	106.1512	30.3772	136.5284	77.0455	209.2510	78.0127	4	-	-	-	4	-
				106E-2	106.1512	30.3772	136.5284	77.0455	209.2510	78.0127						
		06	106.9034T	106T	106.9034	34.7772	141.6806	77.5914	214.9185	78.5885	2	-	-	-	2	-
		합 계									129	13	4	17	112	6

※ 상기 타입(약식표기) 중 전용 106C-1, 106C-2 및 106E-1, 106E-2는 타입별 테라스 공간 위치 및 공간이 상이하니 청약 신청 시 주택형 106.1512C(106C-1, 106C-2) 및 106.1512E(106E-1, 106E-2)로 단일 주택형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타입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 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넷째자리까지 표현)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 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27년 04월로 예정 되어있으나, 공정 및 (가칭)우리초등학교 개교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현대건설 외 1개 업체”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명 : 여수 죽림 힐스테이트 A2블록

- 사업주체 : 전남개발공사 / 현대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길축산업개발

- 시공사 : 현대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길축산업개발

■ 공급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15일 이내	2024.10.15	2025.03.14.	2025.08.14.	2026.01.15.	2026.05.15.	2026.09.15.	입주자정일
106A	20	215동 2호	1층	1	142,842,000	353,780,000	35,378,000	532,000,000	10,000,000	4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59,600,000
			2층	1	146,064,000	361,760,000	36,176,000	544,000,000	10,000,000	4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3층	1	152,508,000	377,720,000	37,772,000	568,000,000	10,000,000	4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4층	1	155,730,000	385,700,000	38,570,000	580,000,000	10,000,000	4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74,000,000
			5-9층	5	158,952,000	393,680,000	39,368,000	592,000,000	10,000,000	4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77,600,000
			10-17층	8	160,563,000	397,670,000	39,767,000	598,000,000	10,000,000	4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179,400,000
			18-19층	2	161,905,500	400,995,000	40,099,500	603,000,000	10,000,000	5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80,900,000
			20층	1	162,711,000	402,990,000	40,299,000	606,000,000	10,000,000	5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81,800,000
106B	73	210동 1호, 2호	1층	2	144,453,000	357,770,000	35,777,000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2층	2	147,675,000	365,750,000	36,575,000	550,000,000	10,000,000	4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3층	2	154,119,000	381,710,000	38,171,000	574,000,000	10,000,000	4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172,200,000
			4층	2	157,609,500	390,355,000	39,035,500	587,000,000	10,000,000	4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100,000
			5-9층	10	160,831,500	398,335,000	39,833,500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10-19층	14	162,442,500	402,325,000	40,232,500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20층	2	163,248,000	404,320,000	40,432,000	608,000,000	10,000,000	5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182,400,000
			22층	2	164,053,500	406,315,000	40,631,500	611,000,000	10,000,000	5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23층	2	164,859,000	408,310,000	40,831,000	614,000,000	10,000,000	5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84,200,000
		211동 2호	2층	1	147,675,000	365,750,000	36,575,000	550,000,000	10,000,000	4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3층	1	154,119,000	381,710,000	38,171,000	574,000,000	10,000,000	4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172,200,000
			4층	1	157,609,500	390,355,000	39,035,500	587,000,000	10,000,000	4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100,000
			5-9층	5	160,831,500	398,335,000	39,833,500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10-16층	5	162,442,500	402,325,000	40,232,500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17층	1	164,053,500	406,315,000	40,631,500	611,000,000	10,000,000	5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19층	1	164,859,000	408,310,000	40,831,000	614,000,000	10,000,000	5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84,200,000
		215동 1호	1층	1	143,110,500	354,445,000	35,444,500	533,000,000	10,000,000	4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59,900,000
			2층	1	146,332,500	362,425,000	36,242,500	545,000,000	10,000,000	4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3층	1	152,776,500	378,385,000	37,838,500	569,000,000	10,000,000	4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170,700,000
			4층	1	155,998,500	386,365,000	38,636,500	581,000,000	10,000,000	4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5-9층	5	159,220,500	394,345,000	39,434,500	593,000,000	10,000,000	4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177,900,000
			10-17층	8	160,831,500	398,335,000	39,833,500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18-19층	2	162,442,500	402,325,000	40,232,500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20층	1	163,248,000	404,320,000	40,432,000	608,000,000	10,000,000	5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182,400,000
106 C-1	6	210동 1호, 2호	12층, 15층, 18층	3	163,785,000	405,650,000	40,565,000	610,000,000	10,000,000	5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21층	1	165,664,500	410,305,000	41,030,500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211동 2호	12층	1	163,785,000	405,650,000	40,565,000	610,000,000	10,000,000	5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18층	1	165,664,500	410,305,000	41,030,500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106 C-2	5	210동 1호, 2호	12층, 15층, 18층	4	163,785,000	405,650,000	40,565,000	610,000,000	10,000,000	5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211동 2호	21층	1	165,664,500	410,305,000	41,030,500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106D	19	212동 1호	1층	1	144,453,000	357,770,000	35,777,000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2층	1	147,675,000	365,750,000	36,575,000	550,000,000	10,000,000	4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3층	1	154,119,000	381,710,000	38,171,000	574,000,000	10,000,000	4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172,200,000
			4층	1	157,609,500	390,355,000	39,035,500	587,000,000	10,000,000	4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100,000
			5-9층	5	160,831,500	398,335,000	39,833,500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10-19층	7	162,442,500	402,325,000	40,232,500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20층	1	163,248,000	404,320,000	40,432,000	608,000,000	10,000,000	5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182,400,000
			22층	1	164,053,500	406,315,000	40,631,500	611,000,000	10,000,000	5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23층	1	164,859,000	408,310,000	40,831,000	614,000,000	10,000,000	5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84,200,000
106 E-1	2	212동 1호	12층, 18층	2	163,785,000	405,650,000	40,565,000	610,000,000	10,000,000	5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106 E-2	2	212동 1호	15층	1	163,785,000	405,650,000	40,565,000	610,000,000	10,000,000	5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21층	1	165,664,500	410,305,000	41,030,500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106T	2	201동 2호 202동 2호	13층	2	173,451,000	429,590,000	42,959,000	646,000,000	10,000,000	5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93,80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분양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기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106.1326A	106.1708B	106.1512C		106.1708D	106.1512E		106.9034T
약식 표기	106A	106B	106C-1	106C-2	106D	106E-1	106E-2	106T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향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주첨하여 주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건본주택에는 106m²B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건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탈로그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세대의 당첨자는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홈페이지 및 분양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인지세의 경우 사업주체 및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해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106A	106B	106C	106D	106E	106T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9	-	2	-	-	1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	1	-	-	4
합 계	3	11	-	3	-	-	1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 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청약통장 자격요건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유의사항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여수시 및 전라남도)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 이하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점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점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 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소형·저가주택을 1세대 또는 1호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당첨자 발표 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자격 검증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4-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입양의 경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여수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또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 ②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여수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또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피부양 직계존속 포함) 중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1호 또는 1세대만 인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비고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여수시 및 전라남도)</th></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여수시 및 전라남도)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여수시 및 전라남도)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여수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또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그 외(여수시)</td><td>-</td><td>100%</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그 외(여수시)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그 외(여수시)	-	100%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신청자가 여수시 6개월 미만 거주자,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본 주택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및 순번을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및 순번을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부부의 경우 앞선 당첨 인정)를 제외하고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가·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 된 자는 향후 연락처 변경 시 당사 건본주택에 유선으로(1551-4788)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 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청약 당시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예비입주자 공급 선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불참 등]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살지 아니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1억원 이하인 1호 또는 1세대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의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구분없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 등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름)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등 옵션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4.04.22.(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여수시 웅천동 1802-3)
일반공급	1순위	2024.04.23.(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4.04.24.(수) 09:00~17:30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21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4.05.07.(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4.05.19.(일)~2024.05.21.(화) (10:00~17:00)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02-3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정

구분	자격확인 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4.05.09.(목)~2024.05.12.(일) 10:00 ~ 17:00	당사 건본주택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02-3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분양홈페이지와 개별통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시에는 당사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jukrim>)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향후 고지하는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계약체결장소 내 혼잡 및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정당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유형별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동·호수 추첨 등은 계약체결장소 내 혼잡 및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 등록번호”, “세 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 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당첨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 서류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당첨자 서약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예비 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산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또는 미성년 자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확인)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	• 접수장소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본인만)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① 파견 및 출장명령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①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제3자 대리인 신청자	○		위임장	본인(청약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 받은 해당자		○	무주택 소명 서류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2.)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 1통 필요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안내

9-1

계약체결 시 일정 및 구비서류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024.05.19.(일) ~ 2024.05.21.(화) 3일간 (10:00~17:00)	당사 견본주택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계약금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접수장소에 비치
	○		수입인지(인지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씩) 납부하여야 함•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접수장소에 비치(대상자에 한해 작성)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완료 시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입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분양대금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시공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시공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 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9624-0100-25842	전남개발공사(죽림공동주택)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공급대금의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광주은행, 1127-020-320942, 예금주 : 전남개발공사)로 관리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전남개발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인지세의 경우 사업주체 및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주택전시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전시관에서 현금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유의사항

- 분양대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 및 (가칭)우리초등학교 개교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인지세의 경우 사업주체 및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이자 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 미신청자 또는 대출 불가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대납하기로 하며(단,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최초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진행 절차 : ① 사전방문 안내문 발송 ② 입주자 현장도착 ③ 접수 및 교육 안내 ④ 입주자방문 및 확인사항 작성 ⑤ 방문표 제출 ⑥ 보수완료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방문 확인사항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7년 04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 및 (가칭)우리초등학교 개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2027년 9월 (가칭)우리초 개교 예정이나, 관련 기관의 계획 변경에 따라 개교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본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주택전시 관),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내방고객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사업주체의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 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으며,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동·호수를 배정받을 시 당첨자로 관리되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 안분 후 합계 아파트 대지면적은 소수점 차이에 따라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여 아파트 대지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 포함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및 (가칭)우리초 개교 일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청약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10-3

부대복리시설

부대 · 복리시설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미정),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카페, 게스트룸, 스카이라운지, 스카이전망대, 루프탑쉼터

10-4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7m	2.7m
지하2층	2.7m	2.7m
지하3층	2.7m	2.7m

11

추가선택품목 계약

11-1

발코니 확장 관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타입(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15.	입주지정기간
106A	9,990,000	999,000	999,000	7,992,000
106B	8,390,000	839,000	839,000	6,712,000
106C-1	8,490,000	849,000	849,000	6,792,000
106C-2	8,490,000	849,000	849,000	6,792,000
106D	8,390,000	839,000	839,000	6,712,000
106E-1	8,490,000	849,000	849,000	6,792,000
106E-2	8,490,000	849,000	849,000	6,792,000
106T	16,390,000	1,639,000	1,639,000	13,112,000

■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발코니 확장 비용 계약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9625-0100-21635	전남개발공사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광주은행 1127-020-320958 예금주 : 전남개발공사)로 관리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납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틀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틀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폭, 깊이) 감소,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시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의 형태 및 크기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열교환기 설치 여부에 따라 주택형별의 발코니 외부 창호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 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10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11-2

기타 유상옵션 관련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총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15.	입주지정기간	
106A, 106B, 106C-1, 106C-2, 106D, 106E-1, 106E-2	부분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5,720,000	572,000	572,000	4,576,000	삼성전자
		공기청정형		6,620,000	662,000	662,000	5,296,000	
	전실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10,560,000	1,056,000	1,056,000	8,448,000	
		공기청정형		12,360,000	1,236,000	1,236,000	9,888,000	
106A (주방 수납강화형, 현관 수납강화형)	부분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5,720,000	572,000	572,000	4,576,000	
		공기청정형		6,620,000	662,000	662,000	5,296,000	
	전실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020,000	902,000	902,000	7,216,000	
		공기청정형		10,520,000	1,052,000	1,052,000	8,416,000	
106T	부분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알파룸	6,930,000	693,000	693,000	5,544,000	
		공기청정형		8,130,000	813,000	813,000	6,504,000	
	전실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알파룸	12,210,000	1,221,000	1,221,000	9,768,000	
		공기청정형		14,310,000	1,431,000	1,431,000	11,448,000	

■ 시스템 에어컨 공사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 및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는 기본확장형 기준이며, 향후 평면선택 옵션 선택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 2개소(거실 : 스탠드형, 안방 : 벽걸이형) 냉매배관이 기본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 에어컨 전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 전용 콘센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로 일괄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4.10.15.	입주지정기간	
살균 청정 환기 시스템 (광플라즈마 전열교환기+광플라즈마 공기청정기+통합센서일체형유닛)	전타입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광플라즈마 전열교환기 : 에이피 EAP- 0150nhb-8 광플라즈마 공기청정기 : 그렉스 AC-250 통합센서일체형유닛 : 세익 SMC-770GD
인덕션	전타입	480,000	48,000	48,000	384,000	SK매직 IHR-B3200
빌트인 냉장고(LG)	전타입	6,020,000	602,000	602,000	4,816,000	LG 오브제+냉장고장
빌트인 냉장고(삼성)	전타입	5,560,000	556,000	556,000	4,448,000	삼성 비스포크+냉장고장
기능성 오븐	전타입	320,000	32,000	32,000	256,000	삼성 NQ36A6555CK
식기세척기	전타입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삼성 DW60A5055BB

-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살균청정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가 설치되며 램프는 연 1회 교체를 권장한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램프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구분	내용		제조사	106A	106B	106C-1 · 106C-2	106D	106E-1 · 106E-2	106T
현관	현관창고	현관창고 도어+시스템 선반+하부 간접조명+도어마감+시트판넬	리바트 外	1,990,000	1,920,000	1,920,000	-	-	-
		현관창고 도어+시스템 선반+하부 간접조명+도어마감+ 시트판넬 + 복도팬트리	리바트 外	-	-	-	2,750,000	2,750,000	-
	현관장	현관장 + 침실1 불박이장 + 하부 간접조명 + 도어마감 + 시트판넬	리바트 外	-	-	-	-	-	4,37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상부장 유리전동플랩장(일부) + 주방가구 간접조명 + 아일랜드 간접조명+ 가구판넬	리바트 外	7,840,000	-	-	-	-	5,860,000
		상부장 유리전동플랩장(일부) + 주방가구 간접조명 + 아일랜드 간접조명+주방우물천장루버시트판넬(간접조명)+ 가구판넬	리바트 外	-	5,270,000	5,270,000	5,360,000	5,360,000	-
	주방 와이드 다이닝	와이드 다이닝 + 일반키큰장+주방우물천장 루버시트판넬(간접조명)	리바트 外	-	-	-	-	-	2,700,000
		주방장 유리장식장 (주방 와이드 다이닝 선택시)	리바트 外	-	-	-	-	-	5,400,000
	주방 수납강화형	와이드 다이닝 + 더블 팬트리(유리도어+1SD) + 주방우물천장 루버시트판넬(간접조명)	리바트 外	3,120,000	-	-	-	-	-
		주방팬트리(유리도어) + 시스템선반 + 복도장(유리장식장)	리바트 外	-	-	-	-	-	2,950,000
	현관 수납강화형	와이드 다이닝+현관창고 수납강화형+주방팬트리(1SD)+가전소물장 +주방우물천장 루버시트판넬(간접조명)	리바트 外	5,460,000	-	-	-	-	-
	엔지니어스톤	엔지니어스톤 주방 벽	LX하우시스	1,070,000	970,000	970,000	970,000	970,000	950,000
		엔지니어스톤 주방 벽(와이드 다이닝 선택시)	LX하우시스	-	-	-	-	-	1,160,000
	세라믹 타일	세라믹 타일 주방 상판 및 벽	리바트	3,440,000	3,100,000	3,100,000	3,100,000	3,100,000	2,940,000
		주방 아일랜드 확장형 세라믹 타일 주방 상판 및 벽 (식탁 일체형/바 카운터형 무상선택제)	리바트 外	-	3,430,000	3,430,000	3,430,000	3,430,000	-
		세라믹 타일 주방 상판 및 벽(와이드 다이닝 선택시)	리바트 外	-	-	-	-	-	3,680,000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유리도어)	리바트 外	-	-	-	-	-	1,380,000
전실	광폭 강마루	전실(딤브라운/켄차그레이 무상선택제)	동화마루	23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60,000
	타일마루+ 강마루	타일마루(복도 + 거실 + 주방) + 강마루(침실)	구정마루, 마블러스 젠	1,540,000	1,460,000	1,460,000	1,520,000	1,520,000	2,280,000
	타일마루+ 강마루	타일마루(복도 + 거실 + 주방) + 강마루(침실) - 평면옵션 선택 시	구정마루, 마블러스 젠	1,690,000					2,430,000
	타일마루+ 광폭 강마루	타일마루(복도 + 거실 + 주방) + 광폭 강마루(침실) (딤브라운/켄차 그레이 무상선택제)	구정마루, 마블러스 젠	1,670,000	1,580,000	1,580,000	1,640,000	1,640,000	2,390,000
	타일마루+ 광폭 강마루	타일마루(복도 + 거실 + 주방) + 광폭 강마루(침실) (딤브라운/켄차 그레이 무상선택제) -평면옵션 선택 시	구정마루, 마블러스 젠	1,870,000					2,590,000
거실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1,200×1,200)	리바트	950,000	860,000	860,000	860,000	860,000	1,300,000
	거실-복도 특화	세라믹타일(아트월연장) + 픽처레일 일체형조명 + 시트판넬	리바트 外	4,860,000	7,250,000	7,250,000	6,600,000	6,600,000	8,000,000
	조명 특화	우물천장 간접등+다운라이트+13인치 월패드+ 실링팬(화이트/오크 색상선택)	알토 外	5,540,000	5,540,000	5,540,000	5,450,000	5,450,000	5,290,000
복도	복도팬트리	복도팬트리+시스템선반(유리도어)	리바트 外	-	1,060,000	-	1,060,000	-	1,700,000
		복도팬트리+시스템선반(유리도어)+가전소물장	리바트 外	-	-	-	-	-	2,760,000
	복도장	유리장식장	리바트 外	-	-	1,020,000	-	1,020,000	-

침실1	슬라이딩도어 불박이장	슬라이딩 도어	리바트	3,990,000	3,810,000	3,810,000	3,770,000	3,770,000	-
	드레스룸2	시스템선반(가구도어)+불박이장 / 현관 수납강화형 선택 시 선택 불가	리바트 外	-	-	-	-	-	1,100,000
	파우더장	입식파우더장	리바트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드레스룸	H-드레스퀘어	입식파우더장(시스템가구형)+ 유리도어 + 시스템선반(벽판넬형)	리바트 外	10,250,000	8,230,000	8,230,000	8,230,000	8,230,000	-
	맨스케이브	입식파우더장(일반가구형)+ 유리도어 + 시스템선반(벽판넬형) + 슬라이딩도어	리바트 外	6,190,000	-	-	-	-	-
침실1 外	침실2 불박이장	여닫이 도어 / 측면전신경	리바트 外	1,470,000	1,470,000	1,470,000	1,470,000	1,470,000	1,470,000
	침실2,3 통합형	침실 + 스테디룸 + 드레스룸 + 슬라이딩도어	씨넷 外	1,270,000	-	-	-	-	1,110,000
	침실3 알파룸 통합형	침실 + 스테디룸 + 드레스룸 + 슬라이딩도어	씨넷 外	-	1,380,000	1,380,000	1,380,000	1,380,000	-
	침실2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 도어	리바트 外	-	800,000		800,000	-	-
욕실	위생기구 특화	욕실 수전 + 도기	American Standard	3,660,000	3,660,000	3,660,000	3,660,000	3,660,000	3,660,000

- ※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세대에 따라 주방키친장이 포함된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설치 및 방 위치, 상세한 확장 부위 등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동작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 세대 여건에 따라 일부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에는 분절라인이 적용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4.10.15.	입주지정일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계약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7903-1411-542095	전남개발공사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농협은행 301-0340-1055-11, 예금주 : 전남개발공사)로 관리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공급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민간참여 공동사업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3 마이너스 옵션 관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구, 타일, 창호, 주방 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 감재품목 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구분	품목	적용범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일괄 선택	문	침실, 욕실	문틀상부마감선, 문선, 문틀 및 문쪽(부속철물 포함)	세대현관문·방화문·주방발코니 문틀 및 문짝, 현관 디지털 도어록, 욕실문틀 하부썰, 목재문틀(가틀), PL창호, 실외기실 그릴창
	바닥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바닥재(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 마루귀틀·디딤판	바닥방수,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 에어컨냉매배관
	벽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초배지, 벽체마감(벽지 및 타일), 각종 가구류, 발코니벽 도장	석고보드, 발코니난간, 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시멘트몰탈(해당부위), 경량벽체, 단열재
	천장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천장지, 반자돌림, 발코니천장 도장, 몰딩	천장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욕실	욕실1, 2	바닥 및 벽마감, 천장재(천장틀 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데, 욕실장,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수전류 등), 액세서리류, 조명 기구, 콘센트, 각종 기기류, 스위치	조적·방수공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	주방가구 및 수납장, 액세서리류, 주방기기류, 벽체마감(타일 등), 싱크 수전, 레인지후드, 주방거치대, 쿡탑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조명기구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부착, 매입, 거치형 조명등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콘센트)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구분	106A	106B	106C-1-C-2	106D	106E-1-E-2	106T
마이너스 옵션 비용	42,309,000	42,399,000	42,371,000	42,399,000	42,371,000	43,97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 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현관중문 포함)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 및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 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간 시설을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서에 따릅니다.
- 「주택법」제60조에 의거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건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m²) x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인접주동디자인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남측 근린공원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높이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인·허가(변경포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주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 경관조명
 2. 조정식재, 조정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바닥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 기타 도시개발사업 미준공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합니다.
- 유상옵션의 품목 및 모델, 가격 등은 계약서 작성 전 입주자모집공고 및 옵션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입주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 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해당 시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허가 증축이 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교육시설의 학생 통학구역, 학교군, 배정방법 등 매년 설정, 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련 유의사항

-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가칭)우리초등학교, 중학생은 2학교군 내, 고등학생은 단일학교(광역배정) 및 일반학교(1학교)내 배치될 계획입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지원청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전라남도교육청 및 전라남도여수시교육지원청) 등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초등학생 수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전라남도교육청은 (가칭)우리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각종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교육시설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전라남도여수시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학교 및 학교군의 경우 관할기관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여수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여수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여수시 체결할 예정입니다.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카탈로그 및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현된 CG(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단지 내 조경계획, 시설계획 등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도서 대비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승인하기로 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설계 일반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관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5항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또한,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특기 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뭉급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 과정중 도로 선형, 식재 수정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 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 (분양자료에 다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등 부분에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과 카탈로그 상의 CG배치도의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지적 측량 성과도 및 각종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통해 확정 되므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눈부심, 세대의 조망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 등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시어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CI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공동주택용지) 지역에 건립되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고, 전라남도 건축경관통합심의 기준 평균 일조권에 충족하며, 일부 세대별/층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모델하우스 도서 비치)하고 계약한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관도시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제Ⅲ편. 경관 및 안전도시·공공부문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당 단지의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입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입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뭉급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 0.204(g) 입니다.

● 주변현황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CG 및 모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닌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지, 하천, 도로, 완충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관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됩니다.
-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설 설치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의 부지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및 옵션선택품목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주출입구, 부출입구, 근린생활시설의 옥외주차장과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 사업대상지 경계선 내 방음벽 설치 및 방음벽으로 인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환기 등 환경권 침해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보행연결교,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 주동/외부공간/단위세대(저층세대 등) 보다 높은 주변도로의 고저차에 의해 발생하는 차량에 의한 빛공해, 사생활침해, 조망, 소음 침해 등
 - 당 단지의 일조권은 전라남도 건축경관통합심의 기준에 충족하며, 고층부/중층부/저층부는 층수에 따라 일조권, 조망 등 침해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단지 고저차에 발생 구간에 설치되는 외부 엘리베이터, 계단, 경사로 등과 인접함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타·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 테라스타입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관할 관청 등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등)로 인해 소음, 빛공해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및 주차타워 등)로 인해 빛공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침에 따라 A2BL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지침 제9조. 5항/6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24시간 개방된 통로로 인접 저층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세대에는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이삿짐 사다리차를 접안할 수 없습니다.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경계부에 생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고 A2BL에는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됨으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해야 합니다.

● 아파트 주동 / 공용부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 커튼월록 등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 건물 외부장식물, 옥상구조물, 커튼월록 등의 디자인/형태/마감재료/디테일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환룸/우수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송풍기/실외기, 테라스타입 세대의 욕실 환기팬, 주동의 계단 및 엘리베이터 구조물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주동/외부공간/단위세대(저층세대 등) 보다 높은 주변도로의 고저차에 의해 발생하는 차량에 의한 빛공해, 사생활침해, 조망, 소음 침해 등
 - 당 단지의 일조권은 전라남도 건축경관통합심의 기준에 충족하며, 고층부/중층부/저층부는 층수에 따라 일부 일조권, 조망 등 침해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 테라스타입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여성전용, 일반 주차대 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다.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특화커뮤니티(스카이라인커뮤니티/스카이전망대/루프탑쉼터) 및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의해 소음, 진동,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및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블록별로 개별 운영될 예정으로 타 블록 입주민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스카이라인지, 스카이전망대, 루프탑쉼터는 외부인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시설이며 해당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준하는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제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현장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모형 및 CG상의 커튼월록 색상, 디자인, 그리드 및 규모등은 실시공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튼월록에 접한면에 창호가 있는 세대의 경우 마감으로 인해 외부 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옥상 및 벽에 설치되는 환기팬으로 인해 외부 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종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차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랜치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을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한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과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지하 3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7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7m
 - 지하 2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7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7m
 - 지하 1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7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7m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 종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4~5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합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단차가 발생하는 부위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1. A2BL

(1)옥외안테나

- 옥상층 : 202동, 205동, 207동, 213동, 215동

(2)중계장치

- 옥상층 : 202동, 205동, 207동, 213동, 215동

- 지하1층: 헬룸

- 지하2층: 헬룸

- 지하3층: 헬룸

2. A4BL

(1)중계장치

- 지하2층 : 헬룸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탑, 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건식공법(모듈러, PC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환기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옥상부에 일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 등으로 인한 일조,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태양광집광판, 안테나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한전패드 스위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동 입주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북측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빛공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4A세대 방향으로 주출입구 문주 계획이 있어, 해당 저층세대의 시야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동 입주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남측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빛공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4A세대 방향으로 주출입구 문주 계획이 있어, 해당 저층세대의 시야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3동 입주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좌측 방향으로 주출입구 문주 계획이 있어, 해당 저층세대의 시야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4동 입주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하부에는 비상차량(소방차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필로티가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음/진동/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남측 도로보다 낮은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205동 입주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남측 도로보다 낮은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주출입구 문주 계획이 있어, 해당 저층세대의 시야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10동 입주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F세대 후면에 루프탑덱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 루프탑덱터가 계획되어 일부 최상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11동 입주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84C타입 우측으로 스카이라운지용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선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 스카이라운지가 계획되어 일부 최상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12동 입주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84F타입 좌측으로 스카이전망대용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선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 스카이전망대가 계획되어 일부 최상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및 단위세대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동/외부공간/단위세대(저층세대 등) 보다 높은 주변도로의 고저차에 의해 발생하는 차량에 의한 빛공해, 사생활침해, 조망, 소음 침해 등
- 당 단지의 일조권은 전라남도 건축경관통합심의 기준에 충족하며, 고층부/중층부/저층부는 층수에 따라 일부 일조권, 조망 등 침해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기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기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본 공사시 실내 환기 디퓨저는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수가 결정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기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기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기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기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이 개별 또는 통합형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기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사용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의 난간 추가 및 난간 형태/재료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 타입에는 돌출발코니가 설치되고, 크기/마감재/난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돌출발코니와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일조,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함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주방가구 설치된 바닥면은 마루, 타일등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도장으로 마감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터닝도어/분합문 등 포함)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외의 사양(제조사, 색상, 재질, 루버형태 및 크기,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 실외기실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침실 내부에 세대분전함 또는 세대단자함이 통합 또는 개별로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및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약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익이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8동, 209동, 210동 일부세대는 방음벽 시공에 따라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부지의 사업대상지 경계선 내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도로에 인접한 208동, 209동, 210동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 위치, 사양, 형태, 높이, 구조, 버드세이 버 적용 및 디자인 등은 관계관청의 지침 및 실시공 시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방음벽은 단지 내부에 위치하므로 방음벽에 대한 유지, 관리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주동 및 단위세대 외관에는 배수/우수 등을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우수 등의 배관이 천정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약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스마트거치대의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정내부 벽체, 다용도실 벽체, 실외기실 벽체, 주방 가구 및 벽체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테라스나 발코니에 오배수/우수용/가스 배관, 환기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공간 제약,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계 / 전기 / 설비

- 각종 장비의 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주차 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세대단자함, 세대분전함, 조명,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 덕트가 노출됩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실외기실, 대피공간,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주방가구 하부,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가구 하부장에 난방용 온수분배기, 화장실 천장내부에 급수 급탕용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건축 조건에 따라 위치 및 설치방식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주방, 발코니 등 일부 구간에서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세대 및 주차장 등 공용부에 설치됩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홀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평형의 우수, 배수, 우수배관은 층상배관으로 계획되고, 하부 세대로부터 이어지는 테라스 공간등에 통기용 배관의 노출에 의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사양 및 상/하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살균청정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가 설치되며 램프는 연 1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램프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 주택분양 및 거래(입주)시 안전관련 정보 제공

분양	법적의무사항	추가 및 보완 제공 내용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1.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2.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풍수해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배수펌프 설치
지진	내진설계	건축구조기준 건축구조기준 KDS 41 00 00 : 2021
방범	-	아파트 각동 지표레벨 기준 1층 및 2층에 동체 감지기 설치
	CCTV 설치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동 1층홀 및 최상층, 단지내부보행로, 차량출입구, 쓰레기분리수거장, 무인택배시설 등 주요지점에 CCTV 카메라 설치
장애인 안전	장애인 이동통로	출입구 경사로, 점자블럭
어린이 안전	놀이터 안전 등급	안전인증검사에 통과된 놀이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낙하에 안전한 두께의 탄성포장재 사용
노약자 안전	보도블럭 미끄럼방지	안전한 보행성 확보를 위해 표면가공을 통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포장재 사용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4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 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관	마루갑을 경사로,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 미끄럼 방지 타일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기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당첨자(예비입주자) 계약체결 기간 내(현장 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장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A2BL
2. 신 청 자: 현대건설㈜
3. 대 지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소하면 죽림리 1지구 내 A2BL
4. 성 능 등 급

가. 소를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양층적벽 차단성능	★
2. 중앙층적벽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공동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성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천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리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양사 침식도량 저소화	해당없음
4. 팔초와 간섭방지 대책의 미달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및·에너지 효율 및 관리지침 준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건축 기술의 적용	★★
9. 온천을 보존을 위한 특별물량의 사용 금지	★★
10. 환경안전성 제품(Eco)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방출 저해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폐물물가능자원의 보존시설 설치	★★★
16. 빗물 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우수처리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환경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인지와·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완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전자주차장 및 차전자도로의 적정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근접성인접의 환경관리 계획	★★★
6. 환경·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무주택의 사회적 책임	★
10. 공동주택의 사회적 책임	★★
11. 세무·인·영지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실내외 공기 질 향상시스템	★★★
14. 방범안전 준행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차단설비	★
3. 내화성능	★
4. 내화난방기	★★
5. 벽도 및 계단 유호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백상지 120g/㎡)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A2BL
건축주	현대건설(주)
건축(예정)일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소하면 죽림리 1지구 내 A2BL
층 수	지하 3층, 지상 20층 / 931세대
면 적	162,559.628㎡(별가면적: 161,277.8196㎡)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설 계 자	남두영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4-0104-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4.1.30. ~ 사용종단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유망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합정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유망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토지이용 및 교통	34%
에너지 및 환경오염	67%
재료 및 자원	71%
물순환관리	44%
유지관리	80%
생태환경	43%
실내환경	56%

2024년 1월 3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인증 국제 용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A2BL
준공연도	2024.1.10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소하면 죽림리 1지구 내 A2BL
층 수	지하 3층 지상 20층(15개층)
면적	162,559.628㎡(㎡)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 계 자	(주)우영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개요

인증번호	23-주-예-14-0221
평가자	박원계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종단 종료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1+등급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등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	에너지 저소비량	48	1+	CO ₂ 배출 저감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제	100		에너지 저소비량	56		CO ₂ 배출 저감
	200			64		CO ₂ 배출 저감
	300			72		CO ₂ 배출 저감
	400					
	500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실제			에너지 다소비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4.7	50.7	36.9	10.5
급탕	35.7	35.1	25.9	7.1
조명	12.7	11.0	30.3	5.2
합계	68.1	4.0	11.0	1.9
		100.8	106.1	24.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종류, 가열,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변동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백상지 120g/㎡)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아파트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90,270,894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75,717,723	기계 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883,530		
		기간이자	4,037,953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3,313,236		
		필요적 경비	1,154,251			조적공사	3,912,110			가스설비공사	773,088		
		그밖의 비용	34,016,742			미장공사	7,907,813			자동제어설비공사	331,324		
		계	129,479,840			단열공사	2,674,947			특수설비공사	-		
공사비		토목	토공사			2,683,885	방수, 방습공사	4,447,100	공사비	그 밖의 공종	공조설비공사	3,313,236	
			흙막이공사			2,408,615		목공사			3,343,684	전기설비공사	19,567,228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4,580,847	정보통신공사	5,922,840
			옹벽공사			-		금속공사			6,954,863	소방설비공사	16,404,055
			석축공사			-		지붕 및 흙통공사			16,718	승강기공사	1,755,000
			우수, 오수공사			344,088		창호공사		11,702,894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5,970,223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003,105		이 윤	4,738,272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37,635		타일공사		5,299,739	계		247,622,126
			도로포장공사			1,032,263	돌공사	1,220,445		설계비		3,223,965	
			교통안전시설물공사			137,635	도장공사	5,500,360		감리비		7,488,324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3,343,684	부대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9,439,891		
						조경공사	1,997,280	수장공사		5,015,526	분담금 및 부담금	6,010,531	
							부대시설공사	993,612		주방용구공사	3,343,684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4,881,779	그 밖의 건축공사	167,184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건축			가시설물공사	2,658,229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1,987,942	계		33,271,029
					지정 및 기초공사	13,491,765		급탕설비공사	3,313,236	그 밖의 비용		61,621,568	
					철골공사	-		오수,배수설비공사	2,429,706	합계		471,994,563	

(단위 : 천원)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므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결정금액	
택지비가산비	법정 택지이자	4,037,953	
	제세공과금 및 기타비용	7,164,782	
	암석지반 공사비	5,712,694	
	말뚝박기 공사비	10,758,191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11,535,325	
	소계	39,208,946	
	건축비가산비	법정초과복리시설건축비	1,963,923
공동주택성능등급가산비		4,311,24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4,195,038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9,936,571
		에어컨냉매배관	3,030,490
		기계환기설비	4,585,051
기타가산비용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9,386,736
		구조심의조건 구조가산비	11,840,344
		외관특화(경관심의)	6,121,585
		건강친화형주택	4,522,026
		법정초과 조경공사	1,728,560
소계	61,621,570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 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

※ 공급계약 또는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및 교환 등만 해당.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설사업관리자				
상호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세움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1동 6층 612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50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26, 2층	경기도 과천시 뒷골2로 8, 2층
사업자등록번호	337-87-00086	220-86-32319	215-81-25903	220-87-01360	138-81-84226
감리금액	7,488,324,982				

■ 사업주체 및 시공자

구분	사업주체			시공자	
상호	전남개발공사	현대건설(주)	(주)길축산업개발	현대건설(주)	(주)길축산업개발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현대빌딩)	전라남도 목포시 후광대로 134, 8층 제805호(옥암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현대빌딩)	전라남도 목포시 후광대로 134, 8층 제805호(옥암동)
법인등록번호	204171-0001423	110111-0007909	201111-0061301	110111-0007909	201111-0061301

■ 분양 홈페이지 : <https://hillstate.co.kr/s/jukrim>

■ 건본주택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02-3

■ 분양문의 : 1551-4788

※ 본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현대건설(주) (주)길축산업개발)가 공동사업주체로 시행합니다.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